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20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제 안 설 명



2023. 9. 11.

서울특별시의회  
유정희 의원 (더불어민주당, 관악4)

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유정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 
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은

「장애예술인지원법」 개정에 따라

장애 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하기 위한

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

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와

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등을  
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4조제2항제2호의2를 신설하여

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

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,

안 제5조의2 신설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 
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본 일부개정조례안의

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은

「장애예술인지원법」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을

따르도록 했습니다.

□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

관한 고시에 따르면 창작물 구매 총액에서

미술관, 박물관의 소장·전시의 미술품·공예품 구매는

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어

동 조례를 개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
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